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 WTO/SPS 회의 참석
- 출장 목적 :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 현황 파악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기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 출장 기간: 2010년 3월 15(월) - 20(토)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송 주 호

※ 농식품부와 식약청 SPS회의 참석대표단과 동행

II. 출장 내용

- 출장 일정

일정	주요활동내역	비고
3월 16일	SPS 비공식회의 참석	
3월 17-18일	SPS 공식회의 참석	
	양자협의 참석	EU, 멕시코, 중국, 브라질

- 주요 출장 결과 (조사, 회의 등 결과 정리)

- 회원국의 SPS 관련 활동, 회원국간 무역현안, 투명성(transparency), 개도국 우대조치, 동등성(equivalence), 해충·질병 지역비발생(free areas), 회원국간 기술지원, SPS 협정 이행실태 제3차 점검, 민간표준(private standard)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SPS 협정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SPS 협정 이행실태에 관한 제3차 점검 보고서(Third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PS Agreement)’가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일부 문구수정 후 채택되었음.
- 2008년부터 논의해 온 “SPS 협정 제12.2조에 따른 회원국간 특별 협의 및 협상에 관한 권고절차(Recommended Procedure for Ad Hoc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Among Members under the SPS Agreement (Article 12.2))"는 회원국간 많은 논란이 있어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민간산업표준(private and commercial standards)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규제 필요성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차기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면담자 인적사항 (생략)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최근 UR, FTA 등 관세협상의 진전으로 SPS 협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SPS 협정으로 인한 국가간 무역마찰이 커지면서 SPS 위원회에서는 해당 국가간 양자협상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음.
- 수출증진을 위해 다른 국가의 검역관련 제도 통보내역 검토가 필요함.

○ 특이사항

- WTO 농업부분에서의 우리나라 입장이 개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SPS 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개도국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선진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예컨대 private standard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입장의 중간 상황)
- SPS 위원회에서도 DDA 협상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중국은 양자협상도 많고, 회의에서의 발언기회도 많으며, 대표단도 10여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 보임)

IV. 첨부자료

○ 회의 의제별 논의 결과 1부

해외출장 결과보고

1. 출장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연구위원 송주호
2. 출장기일 및 출장지: 2010년 3월 15일-20일, 스위스 제네바
3. 출장목적: WTO/SPS 회의 참석 (농식품부 대표단 동행)
4. 출장 결과

가. 주요 의제별 논의내용

☐ 호주의 새로운 BSE 관련 쇠고기 수입 정책

- 호주측은 제3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여부를 검토할 때 광우병에 관한 위생·검역기준을 OIE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새로운 검역정책을 2009.10.20일 공포하고 2010. 3.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새로운 정책(Animal Food Safety Assessment Policy)에 따라 2010.3.8일부터는 BSE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허용여부는 반드시 최대 24개월 소요되는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토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회원국에 알렸음.
- 이에 대해 캐나다, EU 및 미국은 호주의 새로운 BSE 정책으로 인해 자국산 쇠고기의 시장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BSE 기준은 OIE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무역현안 : 대만의 BSE 조치에 대한 캐나다 문제제기

- 캐나다는 대만은 캐나다의 주요 쇠고기 시장 중 하나로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대만측은 캐나다에서는 최근 발생건을 포함하여 그간 17건의 광우병(BSE) 발생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캐나다산 30개월령 이상 소유래 쇠고기에 수입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위험평가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무역현안 : 회원국의 BSE 관련 수입제한 (EU측 제기사항)

- EU측은 일부 회원국들이 BSE와 관련하여 위험수준이 '무시할만한(negligible)' 수준의 지위를 가진 국가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2009년 OIE는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연령의 식육의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제규정을 개정할 점 등을 주목하여 회원국은 OIE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무역현안에 관한 회원국간 특별 협의 및 협상 권고 절차(안)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은 회원국간 무역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SPS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는 틀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일반적 절차를 정하는 작업을 지속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EU,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칠레 등 다수 국가는 동 권고절차에는 horizontal mechanism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이 문제는 현재 NAMA 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NAMA 논의동향을 본 후 SPS 위원회 차원의 규정 마련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의장은 본 의제가 다음 회의에서도 논의할 것임을 언급하고 이전에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의견제출을 희망하고 사무국에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건을 작성하여 회람할 것이며, NAMA 문건과 SPS 위원회 문건을 잘 통합하면 좋은 문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임.

□ SPS 협정 운영 및 이행 실태 제3차 검토

- 제44차 WTO/SPS 위원회 정례회의부터 실시해 온 'SPS 협정 이행실태에 관한 제3차 검토보고서'에 대해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

를 거쳐 일부 문구수정을 수정한 후 이번 정례회의에서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였음.

※ 다만, 이번 채택된 제3차 검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국가는 2010. 4. 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인도가 SPS 위원회에 SPS 협정 제5.6조의 주석 3에서 언급된 “reasonable available”의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언급은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은 그 필요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제기로 하였음.
- 인도, 이집트는 SPS 위원회가 SPS 협정과 민간표준의 범위에 관한 법률 문건(legal note)을 작성할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음.
- 민간상업표준과 관련하여 회원국 및 옵서버는 수행된 연구 또는 분석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위원회는 민간표준에 관한 특별작업반이 제공할 예정인 지침(guidance)을 고려하여 SPS 관련 민간표준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을 계속 고려할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하였음.

☐ 민간상업표준

- 의장은 “Possible Actions for the SPS Committee Regarding Private SPS Standards” (G/SPS/W/247/Rev.1, 5 March 2010)을 토대로 SPS 위원회 차원에서의 그간 활동내역 및 실행 가능한 조치사항을 설명하였음.
- 회원국간은 특별한 논의가 없었으며 차기 회의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양자 협의

☐ 한-EU 양자협의(3.17, 14:00-15:10)

- EU측은 프랑스산 에멘탈 치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잔류기준을 제한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고 그간 우리측의 검토 진행상황을 문의하였음.
- 우리측은 '09.11.16일 아국에서 한-프랑스 치즈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 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월 주한프랑스대사관측에서 우리측에 제시한 에멘탈 치즈 수출위생증명조건을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이 우리측에 제시기로 한 에멘탈치즈 수출위생증명서(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U측은 27개 EU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이 '08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여전히 광우병(BSE)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국 소비자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여부는 이들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EU 개별 회원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아국의 위험분석절차에 따라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등 예비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였음.
- 또한 우리측은 2008년 1월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2009년 6월 관련자료를 우리측에 제출한 프랑스에 대해서는 현재 아국의 수입위험분석절차 중 1단계인 '수입허용여부 검토를 위한 위험평가 진행 가능성 검토' 단계에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 각각 수입허용을 요청한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는 허용요청은 있었으나 관련자료 제출 등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임을 설명하였음.
- EU측은 에너지음료(Red Bull) 수입허용 요청과 관련한 최근 한국 내 진전상황을 문의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Red Bull 제품에서 코카인이 검출됨에 따

라 독일, 홍콩, 대만 등에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더 이상 없을 시 위해평가 등의 후속 절차 재개 및 아국규정을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지난회의 이후 진전된 상황이 없음을 설명함.

- EU측은 Red Bull 제품에서 코카인이 검출된 것은 원료 앞에서 천연유래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우리측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우리측은 최근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멕시코 양자협약(3.18, 12:40-13:10)

- 멕시코측은 자국의 데킬라가 수입되기 위해서는 아국의 주류(데킬라)에 대한 메탄올 함량기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측의 현재 진행상황을 문의함
- 우리측은 멕시코측의 메탄올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멕시코측이 아국 관계당국에 제공한 위해평가자료, 데킬라 제조과정, 메탄올 생성과정, 외국 사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경에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기준을 개정하여 행정예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브라질 양자협약(3.18, 12:30-12:40)

- 우리측은 우리나라산 채소종자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한 브라질측의 회신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09년10월 서신에 대한 조속한 회신과 수출 허용을 위한 고시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브라질측은 우리측 입장을 검역당국에 전달하여 조속히 회신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한-중국 양자협약(3.18, 12:30-12:40)

- 우리측은 지난 1.2일 아국에서의 구제역 발생을 이유로 중국측이 아국산 유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국

제기준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양국간 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측은 자국의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서 본 건은 양국 관계당국간 기술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우리측 우려사항을 자국 관계당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우리측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아국산 김치에 대해 중국측이 대장균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무역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일반 절임식품의 위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국측은 김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현재 양국 관계당국간에 추진 중인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사항을 자국 관계당국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음.
- ※ 중국측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 관련 수입제한’, ‘알팔파 종자에 대한 폐기·반송 처분’ 및 ‘야채 절임식품에 안식향산 사용 제한’ 문제를 제기하였음.

다. 차기 회의일정 등 기타 행정사항

- 금번 정례회의에서 ECOWAS(Economic Community for West African States),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및 CEN-SAD(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가 새롭게 SPS 위원회에서 옵서버로서 자격을 획득하였음.
- 차기 제48차 WTO/SPS 회의는 아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

였음.

- 정례회의 : 2010. 6.29(화)~6.30(수) (2일간), 제네바 WTO
- 비공식회의 : 2010. 6.28 (월)
- STDF 작업반 회의 : 2010. 7. 2 (금)